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0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자 : 박해철 · 윤후덕 · 최기상
채현일 · 임미애 · 신정훈
황 희 · 김태선 · 박정현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사육·보관·수출입 등의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고통 경감과 인도적 대우를 포괄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총괄적 규범이 미흡한 실정임.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제도와 관련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표방하였으나, 목적 조항을 비롯해 기본원칙, 국가 책무 및 해당 수입 허용 요건에 동물복지 내용이 직접 명시되지 않아 하위 규범 마련과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기준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인간과 야생생물의

진정한 공존 및 실질적인 야생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22조의2).

또한, 현행법은 개인이 사육·관리하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야생동물의 유기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상의 일반 동물 유기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래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로 방출되거나 유기될 경우 고유 생태계를 교란·파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미확인 병원체 전파 등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및 공중 보건·인명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이 일반 반려동물에 비해 현저히 높음.

이에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관하는 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소유·보관하는 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 및 공중 보건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70조의2 신설 및 제72조).

아울러, 야생동물의 밀수·유기·유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야생동물 밀수의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은 그 특성에 맞는 사육·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사

전지식 없이 야생동물을 구입한 후 사육의 어려움으로 불법 유기하거나 관리 소홀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생태계 교란 및 동물복지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관리, 불법 구매·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6호 신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물의 다양성”을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생물의 다양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을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에 관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야생동물의 학대금지)”를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는 그 야생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환경에”를 “동물복지 및 환경에”로 한다.

제22조의8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

- 가.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야생동물의 불법 구매 및 유기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다. 사육 중인 야생동물이 유실된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야생동물 구매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
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년”을 “10년”으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00만원 이상 3
천만원”을 “500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
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
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
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본문 중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를 “제69조제1항, 제70조
또는 제70조의2”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u>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생물의 다양성</u> -----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u>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u> 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u>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에 관한</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u>야생동물의 학대금지</u>) ①·② (생략)	제8조(<u>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u>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는 그 야생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수출 등) ① -----

-----동물복지 및 환경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1. ~ 5. (현행과 같음)

6.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

가.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u>나. 야생동물의 불법 구매 및</u> <u>유기에 대한 제재에 관한</u> <u>사항</u> <u>다. 사육 중인 야생동물이 유</u> <u>실된 경우 필요한 조치에</u> <u>관한 사항</u> <u>라. 그 밖에 야생동물 구매자</u> <u>에 대한 교육에 필요하</u> <u>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u>이 인정하는 사항</u>
<u>6. (생 략)</u>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상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2. (생 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u>7년</u>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이 경우 <u>7천만원</u>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00만원</u> 이 상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제67조(벌칙) ① ----- ----- - <u>7년</u> ----- ----- <u>7천만원</u> ----- -----. 1.·2. (현행과 같음) ② ----- ----- <u>10년</u> ----- ----- <u>1억원</u> ----- -----. 제68조(벌칙) ① ----- ----- - <u>5년</u> ----- <u>500</u> <u>만원</u> 이상 <u>5천만원</u> ----- -----.

1. ~ 14. (생 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 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

1.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7년-----
-----7천만원-----.
제69조(벌칙) ① -----
-----3년-----
-----3천만원-----.
1. ~ 1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5년-----
---5천만원-----.
제70조(벌칙) -----
-----2년-----
-----2천만원-----.
1. ~ 16.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벌칙)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양벌규정)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